

# 02

## 고위공직자 피의사실 보도의 기능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김태훈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장\*





## 1. 들어가며

대한민국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으나 정작 그 규정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 조항이 어디 한둘일까. 이 글에서 다루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도 그중 하나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6조)

벌금형이 아예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 점을 보면 법률 비전문가의 눈에도 간단치 않은 중대 범죄 같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다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접수한 피의사실 공표사건은 모두 317건이었으나 그중 66.2%에 해당하는 210건이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33.8%도 ‘수사 진행 중’이거나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행방이 묘연해 처리가 보류됐다. 한마디로 지난 10년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기관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다.<sup>1)</sup>

이쯤 되면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주로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진영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자들을 수사해서 처벌하라”는 요구가 연일 터져 나왔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법무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그에 동참했다. 이

\* 세계일보 전 사회부 법조팀장, 검찰반장 등

<sup>1)</sup> 김한주 (2019. 10. 4). 피의사실 공표 317건 기소는 0. <서울신문> 10면.



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에는 어김없이 피의사실 공표행위 근절 내지 축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sup>2)</sup> 사형제가 있으나 집행하지 않은 지 20년을 넘기는 동안 ‘사형제를 아예 없애라’는 주장과 ‘지금처럼 그냥 존치하라’는 반박이 끊임없이 맞서 온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죄를 놓고서도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필자는 2003년 2월 신문사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에만 3차례(2003~2006년, 2008~2012년, 2015~2018년) 몸담으며 총 10년 가까이 검찰청 및 법원을 출입했다. 자연히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을 여러 번 바로 곁에서 지켜봤다. 검찰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같은 유력 인사의 범죄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청 출입기자들은 ‘대체 저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뭘까’ 궁금해 하며 다방면으로 알아본다. 검찰청 기자실에, 기자 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장이 선다.’ 사안에 따라선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이른바 ‘티타임’이라고 불리는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간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으나, 어떤 경우는 아예 입을 굳게 다물고 언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했다.<sup>3)</sup>

검찰 관계자가 여러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한 티타임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인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티타임에선 전혀 거론되지 않은 내용이 특정 언론사의 특종이나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속칭 ‘물을 먹은’ 경쟁 언론사의 항의 등 문제제기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진다.

2)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자체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2019. 11. 30). 법무부, 기자-검사 접촉 제한 훈령 강행... 알권리 침해 우려.

3) 최근 대검찰청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기존 티타임 관행을 폐지하고 수사 책임자가 아닌 전문 공보관이 브리핑 등 언론 대응을 맡도록 했다. 세계일보 (2019. 11. 27). 수사 담당 안 해 맹탕 브리핑 우려. 11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대하는 태도는 이 처벌 조항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수사기관 종사자, 수사 대상인 피의자 및 그 변호인,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 이렇게 3자가 제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필자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언론계에서 본 고위공직자 피의사실 보도의 기능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에 관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취재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흘려줬다고?” 기자는 억울하다

사실 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 존재에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 조항이 포함된 형법 제7장의 제목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다. 즉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처벌 대상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행 중인 어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설령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기사를 쓴 기자는 수사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국 사태’에서 보듯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지면 기자들, 특히 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마치 수사기관과 ‘공범’인 양 함께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피의사실이 결국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고 있으니 기자들이야말로 진짜 책임이 있다”는 차가운 시선이 팽배하다. ‘나는 힘든 취재를 통해 타사 기자들은 모르는 팩트를 하나라도 더 챙겨 보도했을 뿐인데, 뭐 공범이라고?’ 당연히 상당수 기자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존재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곤 한다.

이와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수사기관 종사자의 언론 플레이, 이른바 ‘정보 흘려주기’가 지금도 존재하는지 여부다. ‘조국 사태’ 와중에 유시민 노무현대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어느 신문사 중견 기자가 KBS 기자의 단독 보도를 거론하며 ‘검사들이 여성 기자와의 술자리에서 은밀한 정보를 술술술 흘려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와 출입기자 사이에 정말 그런 형태의 ‘주고받기’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sup>4)</sup>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흘려준 것이겠지’ 하고 의심하는 시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혐의 내용 공개로 수사 대상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분노한 민심을 등에 업고 수월하게 수사할 수 있어 좋고, 그 피의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는 특종을 해서 좋고, 그야말로 ‘누이

4) 구본우 (2019. 10. 23). KBS, 유튜브 알릴레오서 성희롱 발언한 기자 고소. <조선일보>, 23면.



좋고 때부 좋은' 관계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성 언론에 비판적인 이들은 “수사기관의 선택적인 피의사실 흘리기가 언론사의 특종 보도로 둔갑하는 관행 탓에 정보 제공에서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며 언론과 수사기관을 나란히 질타하곤 한다.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필자는 10년 가까이 법조를 출입하는 동안 검찰 관계자가 은밀하게 ‘흘려준’ 정보를 받아 특종 보도를 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부끄럽다’는 표현을 쓴 것은 필자에게만 은밀하게 정보를 ‘흘려줄’ 끈끈한 취재원을 출입처에서 사귀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어서다. 기자가 특종이나 단독 보도를 하려면 꼭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고급 정보를 손에 쥔 취재원 확보는 필수다.

그렇다고 어떤 기자가 수사와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을 때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흘려준 것이겠지’ 하고 단정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누구 말처럼 ‘술자리에서 정보를 술술술 흘려주는’ 그런 검사는 과거라면 몰라도 요즘은 없다. 아니, 검사도 사람이고 전국에 2,500명 넘는 검사가 있다고 하니 ‘없다’라는 단정적 표현보다는 ‘거의 없다’고 해서 약간의 여지를 열어두는 편이 안전하겠다. 어떤 수사와 관련해 그 내용을 아는 검찰 관계자가 딱 5명뿐이라고 할 때 만약 그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다면 ‘네가 유출 장본인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관계자도 딱 5명뿐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검찰 지휘부에 정말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은 이상 어떤 간 큰 검사가 그럴 수 있을까. 필자로선 쉬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주지 않으면 그런 은밀한 정보를 기자가 어떻게 캐낼 수 있겠어’ 하는 시각에도 허점이 있다. 검찰이 제법 이름 있는 회사나 유명인 집 등에 압수수색을 나가면 불과 10~20분 뒤에 온 세상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다. 검찰 관계자가 기자한테 연락해 “압수수색 들어갈 테니 기사 써”라고 흘려줘서 그럴까. 아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의 직원이나 경쟁업체 관계자, 또는 그 집의 이웃에 사는 이들이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금세 소문이 퍼진다. 특히 기업 압수수색 같으면 주식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언론보다도 해당 업계, 곧 시장이 먼저 알고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형사건은 관계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참고인만 수십 명, 심지어 백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 종사자만 사건 내용을 안다고 여기면 착각이다. 피의자와 참고인도 대충 상황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꼭 핵심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소환조사를 받을 때 일부러 밤늦게까지 기다린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붙들고 “무슨 조사를 받았느냐”고 집요하게 물어본다. 대부분 검찰에서 들은 ‘수사보안’ 요령대로 입을 굳게 다물고 응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핵심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대립하는 주변부 피의자, 평소 피의자한테 당한 게 많아 서운한 감정을 품은 참고인 중에는 작심하고 기자에게 자신이 검찰 관계자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 상세히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 언론사 기자들 모르게 이런 것을 하나둘 챙겨 조합하면 얼마든지 단독 보도가 가능하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언론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제보’가 익명 또는 기명으로 들어온다. 물론 수사기관이 접수하는 신고나 진정, 고소 등과 비교하면 질적 차이가 상당히 클 것이다. 대부분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개인적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읍소에 가깝다. 그래도 사안에 따라선 ‘이걸 토대로 취재를 좀 더 해보면 뭔가 큰 그림(특종 보도)이 나오겠는데’ 싶은 내용이 더러 있다. 영향력이 크고 존재감이 강한 언론사일수록 속칭 ‘얘기가 되는’ 제보를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의 취재가 비록 강제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못 미치겠으나, 그렇다고 언론이 독자적 취재를 통해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언론을 너무 무시하는 행태다. 기자들이 ‘검사가 술자리에서 술술술 흘려준’ 내용이나 그대로 받아 적었다가 보도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다.

### 3.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물론 '수사기관이 특정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길들이고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강한 권력을 유지해나간다는 일각의 의심엔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 과거 1980~1990년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기 때문이다.<sup>5)</sup> 다만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보니 "옛날에는 몰라도 요즘은 그런 일이 일절 없다"는 수사기관의 항변을 반박하기가 도무지 쉽지 않다. 검찰 출입기자 노릇만 10년을 한 필자도 위에서 밝혔듯 수사기관에 의한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2006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의혹을 잡고 수사할 때의 일이다. 굴지의 대기업과 그 경영진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니 검찰청 기자실도 그야말로 북새통이 됐다. 수십 개 언론사가 날마다 피를 말리는 단독 보도 경쟁을 펼쳤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통틀어 가장 큰 특종 보도가 수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터졌다. 검찰이 현대차그룹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모 신문사가 통째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마침 영장 내용이 조간신문에 고스란히 실린 당일은 현대차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바로 그날이었다.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하는 검찰이 일부러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벌 기업의 부도덕함에 분노를 느낀 서민들 사이에 '꼭 구속이 돼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그를 통해 영장심사를 담당할 법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발부됐고 현대차그룹 회장은 구속됐다.

속된 말로 '물을 먹은' 경쟁 언론사 기자들이 검찰에 거칠게 항의했다. 검찰은 "아직 발부되지 않은 영장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만 했다. 감찰도 아니고 단순한 진상조사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그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수사가 종료하고 기자들의 기억에서 잊히며 그냥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구속영장 유출 경위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밖으로 알려진 것은 전혀 없다. 그 일로 누가 경고를 받거나 하다못해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당시의 중수부장은 이후 고검장까지 승진했고 부장 밑의 중수부 수사기획관(언론 공보 책임자)과 수사과장(주임검사)도 훗날 각각 검찰총장, 검사장을 지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9년 이번엔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5) 이와 관련해 1980~1990년대 특수부 검사로 맹활약했던 문영호 전 대검 중수부장은 "가끔 검사가 특정 기자와 유착해 공수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 내용 일부를 슬쩍 흘려 보도되게 한 다음, 압박을 느낀 피의자에게서 수사 협조를 받아 내는 경우다"라고 회상한 바 있다. 문영호 (2019, 11, 27). 검사와 기자, 가깝고도 먼 사이. <중앙일보>, 30면(칼럼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수사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선물로 줬다’는 KBS 기자의 특종 보도는 며칠 뒤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문제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SBS 기자의 단독 보도와 결합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논란으로 비화했다.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는 대목에 한정해 검찰은 내부 수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시인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중수부 관계자는 “우리(검찰) 안에 나쁜 ‘빨대’가 있다”며 “그 ‘빨대’를 꼭 색출하겠다”고까지 했다. ‘빨대’란 기자들끼리 쓰는 일종의 은어다. 특정 언론사 또는 그 소속 기자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끔 단독 보도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내부 정보도 제공하는 은밀한 취재원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빨대’를 색출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는지 모르겠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뜬금없는 ‘빨대’ 논란은 흐지부지 끝났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훗날 폭로한 바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부한테 선물로 건네진 스위스제 고급 시계 관련 수사 상황이 어떤 경위에선지 국가정보원으로 유출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먼저 검찰에 “(노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고급 시계를 받았다는 수뢰 혐의를 언론에 흘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거절하자 얼마 뒤 결국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아니고 국정원 요원이 특정 언론사의 ‘빨대’ 노릇을 했다는 취지다.<sup>6)</sup>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차원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이 전 부장 본인이 오랫동안 국외에 체류하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다.

6) 정대연 (2018. 6. 26). 원세훈, 검찰총장에게 논두렁 시계 언론에 흘리라고 요구. <경향신문>, 10면.



그때 많은 기자들이 의심한 것처럼 검찰이 재벌 회장이나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특정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흘려왔다면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게 누구를 구속할지 말지 판단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끌어들이고 여론을 환기하는 등의 일은 명백히 검찰의 권한 밖이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제4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개인이나 검찰 조직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공익이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순 있다. 정의감에 넘치는 일부 검사는 부도덕한 재벌 총수나 고위공직자를 구속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치지 모르겠다. 하지만 '공익 대표자' 조항 바로 밑에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더 주목해야 한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자는 전국에 2,500명 넘게 있다는 검사들이 이 문장을 날마다 한 번씩 되새기며 음미했으면 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도, '정치적 중립'도 다 좋고 중요한 말이지만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절이 특히 눈길을 잡아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유력 인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피의사실 일부를 공표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검사 개인의 정의감 충족을 위해, 또는 검찰 조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용하려 든다면 이는 검찰청법이 금지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기네한테 유리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할 것이다.

#### 4. 피의사실 보도 자제가 아닌 반론권의 충분한 보장이 해법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헌법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일명 ‘무죄추정’ 원칙이다. 많은 이들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도 바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신분이 달라진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되는 시기다. 기소 후 재판 단계부터 피고인이 된다. 헌법 조문에 ‘형사 피고인’이라고 명시돼 있으니 피고인 이전 피의자 단계는 무죄추정 원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닐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무죄추정 원칙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헌법은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서만(무죄추정을) 규정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된 형사 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 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sup>7)</sup> 피의자 역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즉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면 해당 피의자가 유죄라는 선입관이 확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현재 결정 취지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 처벌한다고 못박았다. 공판 청구, 즉 기소 시점이나 그 이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비판적인 이들은 바로 이 점을 들어 “기소 시점에, 또는 그 이후에 발표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수사 도중에 슬쩍 공개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망신을 주느냐”며 “언론 역시 기소 시점이나 그 이후에만 혐의 내용을 보도하고, 기소 전에는 관련 보도를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이 예외적으로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다. 흔히 ‘엠바고’로 불리는 보도 유예 관행이다. 주로 마약이나 조직폭력배 관련 수사에 적용된다. 마약사범이나 조폭 일당을 수사하는 검찰 등이 언론에 “수사 도중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여러 피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국외로 도망치거나 잠적할 수 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예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먼저 요청한다. 언론이 이를 받아들이면 일종의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마약사범이나 조폭 행동대장이 검거돼도 일절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 마약 유통 총책 또는 조폭 두목까지 구속한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기사가 나가도 된다”며 정리된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엠바고 해제’로 간주, 그때부터 기사를 보도한다.

7) 헌법재판소 1992년 4월14일 선고 '90헌마82' 사건 결정문 참조



문제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처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인물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언론 간에 이런 엠바고 협약이 과연 가능한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거물’이나 ‘실세’로 불리는 권력자가 피의자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론사 입장에서 보도 가치가 매우 큰 사안이다. 더 중요한 건 수사기관 역시 한국 사회의 대표적 권력기관들 중 하나란 점이다. 그 권력기관들이 층층이 쌓인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이 있다. 만약 최고 권부가 검찰을 향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사란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언론 보도조차 꼭 막힌 상황에서 “그 사람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면 정권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덮어”라는 권력자의 한마디 말로 수사가 취소되거나 흐지부지되진 않을까. 이것은 언론의 취재 욕구 충족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도 직결된 문제다.

물론 유무죄 확정 이전에 수사 중인 피의사실 일부가 언론 보도로 공개됐을 때 해당 피의자의 명예나 위신이 실추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현재 권력을 쥐고 있거나 과거 엄청난 권력을 누렸다면, 그래서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부류에 속한다면, 그 정도 시련은 감내하는 것이 바로 ‘공인으로서 도리’,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정권 실세나 정계 거물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당사자는 뭐라고 해명하는지 등을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는 결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취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또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한때 언론을 행정·입법·사법부에 이은 ‘제4부’라고 부른 것도 기사가 취재와 보도 활동을 통해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는지 바로 곁에서 지켜봄으로써 수사를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도 한다.<sup>8)</sup>

언론이 권력기관 견제 및 감시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곳에선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 의혹도 언론이 먼저 단서를 잡고 보도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그를 바탕으로 수사해 처벌로 이어지는 형태가 보편화할 것이다. 그런데 출국금지, 계좌추적, 압수수색, 소환조사,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과 달리 언론사는 오직 취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당연히 수사기관 종사자는 언론사 기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첩보를 갖고 있다. 국가공무원인 검사나 경찰관에 비해 사기업 직원 신분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서면 언론이 뒤따라 이를 보도하는 현행 구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언론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유력 인사가 피의자인 사건 수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늘 명심하고, 행여 수사기관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항상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

또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전달할 게 아니라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의 해명 내지 반박도 충실히 보도해야 한다. 검찰이 ‘유죄’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피의자는 왜 ‘무죄’라고 항변하는 건지 소상히 알림으로써 기사를 접한 독자들 스스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피의자인 사건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대책은 마치 엠바고 협약처럼 피의사실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의 석명권 내지 반론권을 최대한 충실히 보장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

8) 이와 관련해 앞서도 한 차례 인용한 문영호 전 대검 중수부장은 “왜 기자를 멀리해선 안 된다고 선배 검사는 후배에게 가르쳤을까. 그들의 취재 활동이 자신들이 빠지기 쉬운 독선을 견제한다고 믿었던 거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분에 대한 신뢰도 깔려 있었으리라. 밀행(密行)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는, 외부의 감시가 없다면 인권 보호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의 문영호 (2019, 11, 27).

## 5. 피의사실 공표 둘러싼 생산적 논쟁 가로막는 ‘진영논리’

‘조국 사태’를 거치며 ‘옳으나, 그르냐’를 떠나 ‘내 편이나, 네 편이나’에 집착하는 진영논리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병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구나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허물에는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잘못이 있을 리 없어’ 또는 ‘설령 약간의 잘못이 있어도 검찰이 수사해선 안 돼’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일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선 잘한 일도 ‘못했다고 해버리고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될 경미한 사안조차 ‘검찰이 꼭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어느 누가 수궁하겠는가.

10년 가까이 법조를 출입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피의사실 공표만큼 완고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사안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일례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론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검찰 수사에 비판적이던 몇몇 언론사는 일제히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를 비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2010년 ‘수사공보준칙’을 제정, 공소 제기 전 검찰의 수사 상황 브리핑을 엄격히 제한했다.<sup>9)</sup>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6년 이번에는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말 저녁마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시위는 대통령과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했다. 언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연일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상당수는 나중에 사실로 판명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반면 일부는 그냥 해괴한 소문 수준의 의혹 제기로 훗날 명백한 오보임이 드러났다. ‘과도한 마녀 사냥’,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등 항의의 목소리가 청와대 보좌진에서 나오기도 했으나 성난 민심에 파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검찰 수사 착수부터 국회 탄핵 소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은 최종 파면 결정까지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관한 보도가 차고 넘쳤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 때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은 이들은 극소수에 그쳤다.

이런 행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이 본격화하며 이뤄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 때에도 똑같이 되풀이됐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외침에서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지난해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사법부가 행정부와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역시 올해 초 헌정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으

9) 정식 명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다. 법무부 훈령 제761호로 제정돼 2010년 1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로 마무리됐다. 둘 다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대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듯 공개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나중에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40개가 훨씬 넘는 혐의 사실 중 그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은 단 한 가지뿐이더라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었다.<sup>10)</sup> 소수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 보수 성향 법조인들, 그리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나 언론 보도 행태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상황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순간 180도 바뀌었다.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 위조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부인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법무부와 검찰은 이른바 ‘포토라인’을 없애버렸다. 유명인이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기자들이 설치한 포토라인 앞에 잠시 서서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조 전 장관 부부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떠밀려 전격 폐지됐다. 조 전 장관 본인 및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그의 지지자들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무차별 공표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피의사실 공표 근절 내지 축소가 순식간에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10) 세계일보 (2019, 8, 1). 칼럼 ‘피의사실 공표 이대론 안 돼’. 27면



필자가 말하고 싶은 점은 극심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혐의에 관한 보도는 무조건 피의사실 공표로 벌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혐의 관련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니 인정돼야 한다’는 식의 이종적 잣대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그럼 노무현, 조국이 이명박, 양승태와 같다는 거냐” 혹은 “이명박, 양승태보다 노무현, 조국이 훨씬 더 나빠” 같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보수 성향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이든, 진보 성향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장관이든 법 앞에 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명예를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진영을 떠나 모든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단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진영을 떠나 모든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를 허가하자’고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논리적으로 맞는다.

지금처럼 ‘좋은’ 사람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므로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고, ‘나쁜’ 사람을 수사하는 검찰은 ‘용감한 검객’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법전에 있지만 실제 법정으로 간 사례는 없는 것도 우리 사회 전체가 진영으로 갈라져 ‘내 편’을 건드리면 피의사실 공표 범죄, ‘네 편’을 건드리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며 그때그때 입장을 바꿔 온 탓이 클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금처럼 진영논리가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강하게 규정하고 국민들이 저마다의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는 국면이 지속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앞으로도 계속 사문화할 가능성이 크다.

## 6. 결어

두서없이 길어진 글을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먼저, 필자는 피의사실 공표 하면 무조건 ‘검찰이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한테 흘려준 것 아냐’ 하는 냉소적 반응부터 보이는 이들을 향해 반론을 제기했다. 기자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이들과 만나서, 또 수사기관과 무관한 경로를 통해서 수사 상황을 취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상당수 기자는 ‘술자리에서 검사가 술술술 흘려주는’ 얘기가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취재를 거부하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설득하러 무턱대고 사무실 또는 집으로 찾아가거나, 수사기관 밖에 있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알 만한 이가 누구인지 수소문해 그들과 접촉하고 있다.

둘째, 필자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올바른 역할 정립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체포 등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은 정보의 양과 질 측면에서 언론사를 압도한다. 이 분야는 철저히 수사기관에 의해 독점돼 있으며 언론이 수사기관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일은 상상조차 힘들다. 즉 언론 보도가 검찰 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압도적 우위에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언론에 피의사실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등 권한 남용이 없도록 절제해야 한다.

셋째, 필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십분 이해하지만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공인’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사실 보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언론은 피의사실 보도 자체를 삼갈 것이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이 내놓은 반론 또한 충실히 보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자들이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행여 수사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항상 지녀야 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그간 무성했는데 왜 똑떨어지는 해결책은 안 나왔는가를 우리나라 특유의 견고한 진영논리와 결부지어 설명했다. ‘내 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정치검찰’이라고 욕하며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 침해”라고 외치다가도 검찰이 ‘내 편’을 수사하고 나서는 ‘용감한 검객’이란 칭찬과 함께 피의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의 ‘내로남불’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런 이중적 잣대로 말미암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기준이 달라져 결국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사문화하고 말았음을 강조했다.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 사회가 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큰 진척을 이루긴 힘들 것이다. 